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7의2] <신설 2023. 9. 22.>

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(제39조의9 관련)

- 가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, 그 영상 정보를 녹화·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나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.
- 다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.
- 라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.
- 마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[HD(High Definition)]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.
- 바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